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7만3400원으로”를 “7만4500원으로”로, “7만1700원”을 “7만29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788만7천원”을 “80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65만3천원”을 “879만4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68만5천원”을 “781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96만1천원”을 “910만6천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4)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4)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 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37,189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3,234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6,53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7,440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9,642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323만4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744만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964만2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억744만원, 상임위원 연봉은 9964만2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1653만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744만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9964만2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291만5천원으로 한다.

- ⑨ 별표 13 제1호, 제3호 및 같은 표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8,214	78,800
2급(상당) 공무원	109,253	72,800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9,811	36,567
지도관 공무원	101,529	36,567

3.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2급(상당) 이상		61,684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928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9,937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7,928
가급(2급 상당)		79,9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2. ----- 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2호부터 제4호	-----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34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17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7만4500원으로	-----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생략)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현		

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8만7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5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8만5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96만1천원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행과 같음)

② -----

-----.

-----.

1. -----

801만5천원-----

2. -----

879만4천원

3. -----

781만원

4. -----

910만6천원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

-----.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2. -----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
 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
 트를 지급한다.

----- 제4호 및 「교
 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2호
 부터 제4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